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연 월 일	20 . . .

1. 개정이유

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연령보정규정을 도입(시행령 개정안 별표3)함에 따라, 시행규칙상 장애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연령 보정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 시,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도록 규정(안 별표5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중(2026. 4. 28. ~ 6. 8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2호가목1)가) 전단 중 “순음청력검사”를 “순음청력검사(이하 “순음청력검사”라 한다)”로, “역치를 사용한다”를 “역치(이하 “최소가청역치”라 한다)를 사용한다”로 하고, 같은 가)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5 제2호가목1)에 각 세세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2)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에서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진단일 당시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산정한다.

(1)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(dB)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2. 귀의 장애 가. 청력의 장애 1) 청력의 측정 가) 난청의 장애정도 평가는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<u>순음 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</u> 기준으로 6분법$\{(a+2b+2c+d)/6\}$으로 판정하되, 가장 좋은 <u>역치</u>를 사용한다.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(dB)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. <u><신 설></u>	2. 귀의 장애 가. 청력의 장애 1) 청력의 측정 가) ----- ----- ----- 순음 청력검사(이하 “순음청력 검사”라 한다)의 ----- ----- --- 역치(이하 “최소가청 역치”라 한다)----- . 이 경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. (1)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(dB)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.

<u><신 설></u> 나) ~ 라) (생 략)	<u>(2)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</u> <u>사 최소가청역치에서 영</u> <u>별표 3 제7호차목에 규</u> <u>정된 진단일 당시 연령</u> <u>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</u> <u>하여 산정한다.</u> 나) ~ 라) (현행과 같음)
--	---